



제439회국회(정기회)
제1차보건복지위원회

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이수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9848호)

2026. 9.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상지원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2
1. 간호인력 지원센터의 업무로 간호인력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피해 회복 지원 명시 등	2

I. 개요

1. 이수진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9848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이수진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6. 7. 9.

(3) 회 부 일 : 2026. 7. 23.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간호현장에서의 직장 내 괴롭힘인 ‘태움’ 문화가 지속적인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이러한 태움은 피해 간호사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어 이직을 유발하거나 심한 경우 극단적인 선택으로까지 이어지는 등 중대한 피해를 초래하고 있어, 이를 예방하고 피해자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체계적인 대응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이에 간호인력 지원센터의 업무로 간호인력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피해 회복 지원을 명시하고, 간호사 등에 관한 실태조사의 내용에 인권침해 실태에 대한 대응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간호인력의 인권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1항 및 제37조제1항).

II. 주요 내용별 검토

1. 간호인력 지원센터의 업무로 간호인력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피해 회복 지원 명시 등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간호인력 지원센터의 업무로서 간호인력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피해 회복 지원을 명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실시하는 실태조사의 대상으로 현행에 따른 간호사등의 인권침해 실태에 더해 그에 대한 대응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31조 제1항제7호 신설 및 제37조제1항제7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31조(간호인력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기관 등 지역사회의 다양한 간호현장에 근무하는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의 장기근속 유도, 이직 방지, 전문성 및 자질 향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인력 지원센터를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별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31조(간호인력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 ----- ----- ----- ----- ----- ----- -----.
1. ~ 6. (생략)	1. ~ 6. (현행과 같음)
<u><신설></u>	<u>7. 간호인력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피해 회복 지원</u>
<u>7.·8.</u> (생략)	<u>8.·9.</u> (현행 제7호 및 제8호와 같음)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37조(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된 간호사등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 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이를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1. ~ 5. (생략) 6. 간호사등의 인권침해 실태 및 <u>일 ·가정 양립에 관한 사항</u> <u><신설></u> 7. (생략) ②·③ (생략)	제37조(실태조사) ① ----- ----- ----- ----- ----- ----- ----- 1. ~ 5. (현행과 같음) 6. -----그 대응----- 7. <u>간호사등의 일·가정 양립에 관한 사항</u> 8. (현행 제7호와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	---

※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적용례: 제3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실시하는 실태조사부터 적용

나. 검토의견

- 현행법 제31조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의 장기근속 유도, 이직 방지, 전문성 및 자질 향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별로 간호인력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현재 중앙 1개소와 서울·광주·전주·부산·대구 등 권역 10개소¹⁾가 운영되어, 유휴간호사 재취업 교육, 유휴간호사·예비간호사 취업 연계, 간호인력 수급 관련 개선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1) 서울·강원(서울), 부산·울산(부산), 대구·경북(대구), 인천·제주(인천), 광주·전남(광주), 대전·충북(대전), 경기(수원), 경남(창원), 전북(전주), 충남(천안)

□ 또한, 현행법 제37조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5년마다 간호사등²⁾의 수급 변화에 관한 사항, 보건의료기관별·직종별·지역별 간호사등의 현황 및 업무 실태에 관한 사항, 간호사등의 근무여건과 근무환경에 관한 사항, 간호사등의 인권침해 실태 및 일·가정양립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간호사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이를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음³⁾.

□ 한편, 지난 2018년 병원에서 직장 내 괴롭힘, 이른바 태움으로 인해 간호사 사망사건이 발생하였다는 의혹이 제기⁴⁾된 이후 보건복지부는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대책’을 발표한 바 있고, 이후 2023년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통해 간호인력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자 하였음.

그러나 2022년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직장내 괴롭힘을 경험한 간호사는 약 30.1%에 달하였으며, 올해 7월에도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한 것으로 추정되는 간호사 사망사건이 발생하고 과거 사망사건이 발생한 의료기관에서도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이 발생⁵⁾하는 등 간호인력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이 지속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음.

2) 「간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간호사등”이란 간호사·전문간호사·간호조무사를 말한다.

3) 「간호법」 제정(2024.9.20. 제정, 2025.6.21. 시행) 이전 2022년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에 포함되어 간호사에 대한 실태조사가 실시된 바 있고, 2026년 간호사등에 대한 실태조사가 실시되었으나 보고서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음.

4) 청년의사, ‘태움’으로 간호사 숨졌지만 조용한 서울아산병원, 2018.3.2.

<https://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53148>

한겨레, 경찰 “박선욱 간호사 ‘태움’ 확인 못 해 내사중결”, 2018.3.19.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36692.html

5) MBC 뉴스, [단독] 경찰, ‘간호사 태움 사망’ 경기 광주 병원 압수수색, 2026.7.23.

https://imnews.imbc.com/news/2026/society/article/6839493_36918.html

SBS 뉴스, 7년 전 간호사 ‘태움 사망’ 있었는데 또... 직장 내 괴롭힘 의혹, 2026.7.28.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8678932&plink=ORI&cooper=NAVER

□ 이에 개정안은 간호인력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피해 회복 지원을 간호인력 지원센터의 업무로 명시하고, 현행법 상 실태조사 대상으로 규정된 간호사등의 인권침해 실태뿐만 아니라 간호사등의 인권침해에 대한 대응도 실태조사 대상으로 추가하여, 간호인력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완화하고 근무환경 개선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 참고로, 「간호법」 제정 이전 2022년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에 포함되어 실시된 간호사에 대한 실태조사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현황 등 인권침해 실태에 대해서는 조사가 이루어졌으나 그에 대한 대응에 대해서는 조사가 이루어진 바 없음.

□ 다만, “간호인력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피해 회복 지원”을 간호인력 지원센터의 업무로 명시하는 것과 관련하여 이를 통해 해당 업무의 근거를 명시적이고 구체적으로 마련할 수 있는 측면이 있는 반면,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간호인력 지원센터는 현재도 현행법 제31조제1항제2호 및 제6호6)에 근거하여 의료기관 내 인권침해 예방 및 대응방안 매뉴얼 등을 개발하고, 찾아가는 인권교육 실시하며, 피해 인력에 대한 심리상담을 지원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예방 및 피해 회복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6) 「간호법」 제31조(간호인력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기관 등 지역사회의 다양한 간호현장에 근무하는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의 장기근속 유도, 이직 방지, 전문성 및 자질 향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인력 지원센터를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별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2.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이나 전문대학(구제 전문학교와 간호학교를 포함한다) 졸업예정자에 대한 취업 교육 및 신규 간호인력의 취업 확대와 장기근속 유도 지원

6. 간호인력의 업무 수행 중 발생하는 고충 해소 및 상담 지원

다. 관계부처 및 관련기관 의견

□ 보건복지부

- 간호인력의 근무 환경 개선에 대한 현장의 요구가 큰 만큼,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예방과 피해 회복 지원 및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의료기관 대응 현황 조사를 구체적이고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당해 간호법 개정안에 이견 없음.

□ 대한간호협회

-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제도적 대응의 근거를 마련하여 간호인력의 인권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개정 법률에 찬성함. 다만, 당해 개정안은 지원 범위와 방식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은 상황으로, 법률 실효성 확보를 위해 피해 회복 지원의 범위와 방식 등 구체적인 내용이 하위법령에서 명확히 결정될 수 있도록 하는 위임규정을 둘 필요가 있음.

□ 대한간호조무사협회

-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피해 회복 지원체계 구축은 간호인력 이직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만, 현재 간호인력 지원센터가 간호협회에 위탁되어 간호사 중심으로 서비스가 운영되고 있으므로, 개정안 취지인 간호인력에 대한 인권 보호가 간호조무사에게 실효성 있게 적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대한전공의협의회

- 병원 내 위계적 조직문화에서 비롯되는 인권침해를 제도적으로 예방·구제하고, 그 개선 여부를 국가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관찰하려는 개정안의 입법 취지에 전적으로 공감함. 다만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간호인력 지원센터에 개별 의료기관의 고충처리 창구와 독립적으로 접근가능한 통로를 마련하고, 지원 실적 등은 실태조사와 연동되어 정책에 환류되는 체계를 조성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직장 내 괴롭힘 상황에 대해 실효적 제재 수단을 포함한 집행 체제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대한물리치료사협회

- 개정안에 찬성함.

□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 개정안에 찬성함.

문 의 처
02) 6788-5494